

2022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공고

- 강원도 특화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2022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마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강원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평생교육강좌에 지원
- 소외계층과 마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2. 사업기간

- 2022. 3월 ~ 10월

3. 공모개요

※ 분야별 사업개요는 [참고] 확인

분야	신청대상	주요내용	지원규모
계			총90,400천원 (총 19개 기관마을)
강원도형 특화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관 중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단체	· 강원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강좌 운영 · 지역문화 계승 강좌	총40,000천원 (8개 기관 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장애특성과 강원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강좌 운영	총10,000천원 (5개 기관 내외)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마을대표조직	· 마을주민 역량강화와 마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총40,400천원 (6개 마을 내외)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보조금의 5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
- 지원항목 :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운영비
 - 분야별 지원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기준과 단가는 [참고] 확인
- 지원제외
 - 최근 5년 동안(2017~2021) 공모사업 보조금을 반환한 경력이 있는 기관·단체
 - ※ 집행잔액 반환경력은 제외, 코로나-19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사업을 미운영한 경우는 신청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특정기관이나 단체, 정당의 이익사업 또는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동호회 활동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2. 14.(월) ~ 18.(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한글파일 접수 후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는 우편·방문접수
 - (전자우편)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한글문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 (우편·방문)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마감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글문서(전자우편)와 원본(우편·방문)을 모두 제출
- 제출서류

공모분야	신청대상	제출서류
- 강원도 특화 평생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별 평생교육 기관단체	- 공문,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소개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관·단체 증명서류 각 1부 - 한글문서(전자우편)과 원본(우편·방문) 모두 제출
-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마을대표조직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현황,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자체지원 협약서, 기관단체 증빙 서류 각 1부 - 시·군이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수신처 : 강원인재육 성재단)하고 원본(우편·방문) 모두 제출 ※ 2월 중 수신처명 변경예정, 제출 전 유선연락 요망

○ 제출처

- (전자우편) ※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254-7777(내선:254,255))
 - (강원도 특화 평생교육) nys3929@gwdinje.kr
 - (장애인 평생교육/강원도 평생학습마을) mkjang@gwdinje.kr
- (우편·방문) (24455)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 101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

6. 선정발표

- 선정방법 : (1차) 적격여부 심사 → (2차) 심의위원회 심사 → (3차) 중복지원여부 확인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강좌 관리계획, 예산산출의 타당성
- 결과발표 : 3. 7.(월) 예정 /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에 게시, 개별 유선통보
- 보조금교부 : 3월 3째주 예정 / 진흥원에서 기관 보조금 계좌로 사업비 전액입금
- 기타사항
 - 선정된 기관은 담당자교육에 필수로 참석(3월 말 예정)

7. 유의사항

-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금액이 조정되어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안내 예정)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작성해주신 성과지표는 사업 종료 후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내년 사업 참여제한과 교부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합니다.
- 사업별 문의처
 - (강원도 특화 평생교육) 교육기획팀 노이선, ☎ 254-7777(내선:254)
 - (장애인 평생교육/강원도 평생학습마을) 교육운영팀 장민경, ☎ 254-7777(내선:255)

[참고] 분야별 지원개요와 운영요건

① 강원도 특화 평생교육

- 운영주체 : 강원도 평생교육기관·단체 8개소 ※ 시·군 및 교육청 산하기관 제외
- 평생교육법·기타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 운영대상 : 강원도 성인학습자 10인 이상
- 주요내용 : 강원도의 특성 및 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평생교육 강좌
- 2021년 지원 강좌 예시

지역	특성	주요내용
고성	평화지역	접경인접주민의 DMZ 탐방을 통해 평화통일관련 지역사회 시민역량 강화교육
정선	자연환경	지역 자연물을 드로인이라는 미술기법으로 표현, 결과물을 지역 홍보자료로 활용
횡성	특산물	강원도 특산품을 활용한 코로나 건강관리 및 면역력 증강음식 만들기
영월	지역연계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글쓰기, 시낭송, 시화만들기 교육
강릉	지역연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체험활동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활동지도사양성

- 지원금액 : 총 40,000천원 ※ 강좌별 최대 5,000천원 지원, 하한액은 제한없음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운영비(교육운영비, 체험운영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교재비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홍보비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용(현수막, 전단지 등)
운영비	1. 교육운영비 -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장소대관료, 교육재료비(사무용품구입 제외) - 코로나 방역물품(교육 중 소진가능한 품목만 가능하며, 자산성 물품구입 제외) ※ 일회용품목은 1회당 강사 포함 참가인원의 130%까지 구입 2. 체험운영비 - 야외체험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 체험 중 식비, 다과비 ※ 일반 집합강의일 경우 식비, 다과비 불가하며, 대응투자비로 편성가능 ※ 단,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식사제공은 최대한 자제

- 기타사항
 - 보조금의 5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5,000천원 신청할 경우 250천원 자부담 편성)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 동호회 활동과 1회성 강좌 지원불가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반영사항 반드시 명시

② 장애인 평생교육

- 운영주체 : 평생교육기관 또는 장애인 기관·단체
- 운영분야 : 장애특성과 강원도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강좌
- 운영대상 : 기관의 장애인학습자 10인 이상
- 주요내용
 - (기초문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 (학력보완) 학력 미취득 장애인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 (직업능력)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 (문화예술) 장애인 여가선용,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유와 활용 교육
 - (인문교양)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생활, 학문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 (시민참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개발하고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 강좌 예시(안)

분 야	예 시
기초문해	한글교실, 지역사회적응교실, 자립생활교육, 컴퓨터 문해교육 등
학력보완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고입검정고시반, 학점은행제 강좌 등
직업능력	자격증취득강좌(바리스타, 컴퓨터 등), 직업기능교육, 직업적응훈련 등
문화예술	요가, 생활공예교실, 미술치료, 문화예술관람 등
인문교양	중도장애인 재활 교육과정, 장애인 성교육, 시낭송, 지역문화탐방 등
시민참여	장애인권교육, 장애인 기자단,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역 나눔 활동 등

- 지원금액 : 총 10,000천원(기관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 세부내용은 신청서식 참고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비	1. 교육운영비 : 현수막 제작, 온라인 회의 플랫폼 사용료, 방역물품 등 2. 체험운영비 : 야외 체험활동을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

- 신청자격 : 장애인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기관 단체
 - 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장애인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기관·단체
 -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자치단체 소속기관(시군청, 평생학습관, 주민센터 등)은 신청불가
- 지원기준
 -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체험활동으로 운영
 - 교육회차 : 8회 이상 필수
 - 교육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에 한함(청소년 및 아동, 유아 제외)
 - ※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은 가능하나 장애인학습자의 비율 70% 이상 필수이고, 상황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보조금의 5퍼센트 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2,000천원 신청할 경우 100천원 자부담 편성)
 -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③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 운영주체 : 18개 시·군
 - (기존 평생학습마을) 인제군 용대2리, 원주시 문막읍, 평창군 대화5리 문화마을
 - (신규 평생학습마을) 공모를 통한 선정이며, 시·군별 1개소 신청 가능
- 운영규모 : 6개 마을(기존 3개, 신규 3개)
- 추진방향
 -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되고 최대 3년까지 지원
 - 3년차 마을 '22년 사업종료, 2년차 마을 ' 23년 사업종료, 1년차 마을 '24년 사업종료
 - ※ 다만 해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기간 내에서 재지원 결정
 - 시·군 대응투자 필수(3년차 보조금의 100%, 1·2년차 보조금의 50% 이상)
 - 마을 자부담 필수(보조금의 5% 이상)
- 연차별 추진목표



○ 역할분담

구분	주요역할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대상 시·군(마을) 선정 등 운영총괄 ▪ 사업비 교부(진흥원→마을)와 성과 평가, 정산 ▪ 담당자 및 주민 역량강화 지도, 각종 회의, 운영점검, 성과공유 등 ▪ 전문위원 위촉 및 운영, 마을간 소통채널 운영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투자 확보 및 대상마을 발굴과 선정 ▪ 추진상황 점검과 운영 관리 등 사업 운영 상시 관리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보고(시·군→진흥원) ▪ 협의체 구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평생학습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정산, 결과보고(평생학습마을→시·군) ▪ 평생학습마을사업 시행 ▪ 진흥원 주관 사업 참가(착수협의회, 담당자회의, 박람회, 성과공유회 등)

○ 마을별 사업추진예시

구분	사업예시
추진협의회 운영	각종 협의회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자원조사	주민 평생학습 요구조사, 문화·역사 등 지역특화자원조사
마을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산물을 활용한 교육, 문화·역사자원 활용 교육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직업능력향상, 시민역량강화, 주민관계 회복교육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주민조직화 교육, 공동체의식 교육, 마을가치 발굴교육
소득연계교육	마을특화상품 제작, 마을기업 육성교육, 상품유통 교육
마을홍보사업	마을축제, 전시회, 특산품 품평회

○ 지원자격 : ①과 ②에서 하나 충족하는 도내 마을

- ① 마을 대표 조직(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 마을회 등)
- ② 마을 내 평생교육사업 추진 경험 또는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
(마을 주민 모임 또는 마을 대표 조직과 협약 후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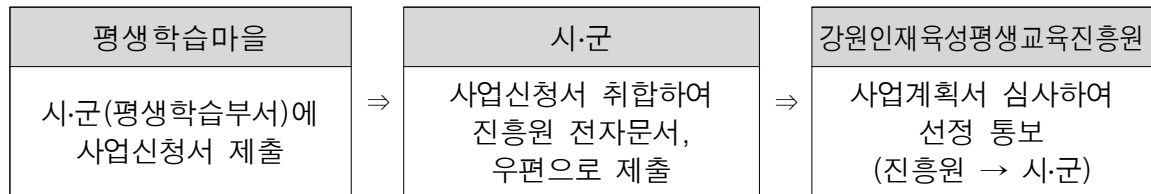
○ 지원금액 : 총 40,400천원(마을별 최대 7,200천원 지원) * 기존마을 21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구분	마을명	지원금액
3년차	인제군 용대2리	5,000천원
2년차	원주시 문막읍, 평창군 대화5리 문화마을	7,200천원
1년차	신규마을	7,000천원

○ 지원내용 : 강사비와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지원항목	주요내용
강사비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강사요건 충족될 경우 주민강사 활용 가능)
교재비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재료비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지 제작 비용 ▪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 ▪ 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 외부 실습, 체험학습, 벤치마킹을 위한 운영비용 (차량임차비, 입장료, 식비, 다과비) ▪ 타은행 송금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예비비(10,000원 이내) ▪ 코로나 방역물품(교육 중 소진가능한 품목만 가능, 자산성 물품 구입제외) ▪ 단, 운영비는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시·군 평생교육부서에서 지역 내 평생학습마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진흥원으로 전자문서 제출



- 제출서류

연번	서식	작성주체
1	사업신청서	시·군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시·군
3	마을소개서	마을
4	운영계획서	마을
5	마을증빙서류	마을

- 기타사항

- 보조금은 「2022년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운영지침」에 맞게 집행과 정산을 해야함. ※ 선정 후 별도 안내
- 사업비는 진흥원에서 평생학습마을로 직접 교부함
- 사업 중간점검과 최종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재지원 결정
- 진흥원 주관 착수협의회, 담당자회의,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석

[참고] 예산지원항목과 유의사항

예산지원항목

※ 세부사업별로 지원항목이 다르므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신청서 참고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강사비	·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 · 강사비 단가는 하단의 지급기준 참조하여 책정 · 교통비(실비) 별도 책정 가능	· 초과시간이 30분이 상일 경우 초과 1시간으로 인정함
교재비	·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구입, 교재발송 비용 · 시판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30퍼센트까지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50퍼센트까지 가능 · 보조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물품에 반드시 '2022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음 명시	· (예)학습자 20명일 때 시판교재:26권까지, 제본교재:30권까지
홍보비	· 강좌 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지 제작 비용 · 보조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물품에 반드시 '2022년 강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음 명시	
운영비	[교육운영비] · 강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재료발송비, 장소대관료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 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회의비 및 회의식사비 지급불가
	[체험운영비] · 강좌에 포함된 행사(실습, 체험학습 등)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 입장료, 식비, 다과비 지원 가능(그 외 지원 불가) · 단순강의 강좌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다과비 지원불가	· 식비:1인 8,000원 · 다과:1인 2,000원

예산편성관련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즉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강사비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기업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공무원 교육기관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진흥원 사전협의 필요)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강사의 왕복이동시간 보상을 위한 수당(정액)을 의미하며 1일 1회 지급가능하고 공직자 등의 경우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가능
- ※ 단, 시간보상수당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지역의 출강 강사에 대해서는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시·도의 출강 강사에게만 지급 가능함
- 관외 강사에 대한 교통비는 대중교통(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준의 실비수준으로 지급 가능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위 사항 중 정해지지 않은 기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으로 유선문의 요망

□ 예산편성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로 지원항목이 다르므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신청서 참고

- 보조금 편성 불가 (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
 - 강좌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다과포함)
(다만, 강좌 운영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의 행사에 한하여 식비 편성 가능)
 - 단순 학습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류비 등
 - 행사부대경비 : 이체수수료, 단체복,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등
- 사업비 편성 불가 (보조금, 대응투자액 모두 편성 불가)
 - 사무실 운영경비 : 직원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구입 등
 - 내부직원 강사료: 수행기관의 내부직원(원장 포함)이 강사로 투입 될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
(단 강사로만 이루어진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는 강사료 지급 허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운영경비
- 예산(보조금, 대응투자액)을 변경할 경우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사전에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

구 분	예 시	
진 흥 원 사 전 승 인 필 요	① 새로운 단위사업 추가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 이상 변경 시	- 총액 5,000천원 중 변경 금액이 1,000천원(20퍼센트) 이상 경우
	③ 항목 간 예산 변경	- 운영비, 교재비, 홍보비, 강사비 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자 체 변 경 가 능 (진 흥 원 과 구 두 협 의 필 요)	① 경미한 사업 내용 변경	- 학습자 수, 수업차시(시간)의 10퍼센트 이내 조정할 경우 - 교·강사 및 교육 장소 일부를 변경할 경우
	② 예산총액의 20퍼센트 이내 변경 시	- 예산 총액 5,000천원 중 변경금액이 1,000천원 미만 일 경우
	③ 동일 항목 내 예산 변경	- 예산의 동일항목 총 금액이 변동되는 않을 경우 - 다만 예산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변동 될 때는 진흥원 승인 필요

- 예산변경은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요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방역물품은 일회용품은 강사포함 1회당 참가인원의 130%까지 구입가능
- 다수가 사용하는 손소독제, 세정제 등은 5회 기준 1개까지 구입 가능
- 온라인교육 운영시 회의플랫폼(ZOOM등) 이용료 결제 가능하나, 회의를 위한 자산취득성 사무기기(노트북, 카메라 등)는 구입 불가능
- 체험활동을 운영을 위한 다과비, 식비 편성 가능하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제공 최대한 지양바람

□ 기타사항

- 공모사업 선정 기관은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 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 보조금 통장 개설 시 반드시 기관명으로 개설하되, 기관 대표자의 이름으로 개설 할 경우 반드시 괄호에 기관명 명시
- 보조금 집행은 기관(법인·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만 가능합니다.
- 강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최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이 밖에 예산지침은 공모사업 분야별 세부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